



자주하는 질문

Q1.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, 어디에 신청하나요?



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. (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「예비양부모 입양신청 및 제출 안내」 참고)

Q2. 예비양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?



「국내입양특별법」 제18조, 「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른 연령, 범죄경력, 환경, 건강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,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심의·의결 예정입니다.

Q3. 가정환경 조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

「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라,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진행합니다. 입양 신청 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·직장·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·조사하며,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·조사합니다.

Q4. 입양허가는 지정된 가정법원이 있나요?



결연 후, 예비양부모가 직접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Q5. 임시 양육 여부와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?



「국내입양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,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가정법원에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적응,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임시양육 결정하게 되면 예비양부모가 임시후견인이 됩니다.

등기우편 제출처

(04520)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, 7층
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담당자(02-6454-8610, 11)

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사업

통합서비스 지원사업

입양인과 가족의 맞춤형 사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사업분야		
생애주기별 교육·사례관리	특수육구아동 프로그램	전국단위 입양가정 대상 프로그램

자조모임 지원사업

입양인(가족)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

모임주제	
입양인(가족) 교류활동	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

심리정서 지원사업

전문상담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국내 입양가정 대상 심리정서 검사 및 상담지원

- 대상: 입양 후 심리·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내 입양가정
 - * (구)입양특례법·(현)국내입양특별법상 만 18세 미만 아동·청소년 입양 가정 (민법상 입양 불가)
 - *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, 지자체 서비스·바우처 대상자 제외

지원대상		
입양아동	형제자매(*직계가족에 한함)	입양부모

- 서비스 구분: 종합심리검사, 아동발달검사, 개별 상담, 치료(미술치료, 놀이치료 등)

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

사업소개 → 입양 → 입양인·입양가족 지원 을 통해
심리정서 지원사업 협약 기관 확인 가능



예비양부모가 한눈에 보는

국내입양 절차안내



보건복지부



아동권리보장원
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



국내입양부모 신청안내



1 입문교육 이수

- 입문교육 이수(필수, 온라인)

* 예비양부모 모두 수강 필요

** 선택교육 3시간 추가 이수 가능

***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신청



2 입양신청

- 입양신청서, 증빙서류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(등기우편)

제출서류

- 입양신청서 1부
- 주인등록등본 1부
- 입문교육 수료증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
-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
-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
-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조회 동의서 1부



3 기본교육 이수

- 기본교육 신청 및 이수(필수, 대면)

* 같은 차수에 예비양부모 함께 수강 필요

**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신청



4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

- 가정조사 전 초기 상담 진행 및 증빙서류 제출(위탁기관 안내 예정)

-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의 가정환경 조사 실시

* 가정조사 시, 예비양부모 모두 참석 필요(동거인이 있을 시 동거인도 함께 참석)

** 3개월 이내(최대 6개월) 이내 가정조사가 완료될 수 있게 협조 필요

제출서류

- 혼인관계증명서
- 양육 예세이
- 재산, 건강, 직장 관련 증빙서류 일체
- * 상세 서류 위탁기관 안내 예정



5 결연 결과 수용 확인

- 양부모 자격심의 결과 통보

* 양부모 자격 심의 결과 통지서(보장원 전달 예정)

- 결연 심의 결과 통보 및 결연 수용 여부 확인(1개월 이내)

* 결연 심의 결과 통지서, 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(보장원 전달 예정)

- 수용 시, 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 작성 및 제출(등기우편/결연심의결과 통지 후 1개월 이내)



6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 신청

- 아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서 및 필수 서류 제출

* 입양허가 전 아동보호를 원하는 경우, 동시에 임시양육신청 가능

제출서류

- 입양허가청구서 1부
- 주민등록등·초본 1부(예비양부모 주소지가 상이할 시 각 1부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
- 기본증명서 각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임시양육결정신청서 1부(임시양육신청 시)
- 양부모교육이수 증명서 각 1부(보장원 전달 예정)
- 범죄경력조회확인서 각 1부(보장원 전달 예정)
- 결연확인서 1부(보장원 전달 예정)



7 임시양육(*임시양육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)

- 임시양육결정문 수신 후 사본 보장원으로 제출(등기우편, 임시양육결정 통지 후 7일 이내)

- 아동권리보장원의 임시양육교육 수강(필수 2시간, 임시양육 결정 통지 후 1개월 이내)

- 예비양부모 주소지 지자체에 임시후견인 신청 후 전입신고

- 월별 양육 기록지 작성 후 시·군·구청에 제출

* 임시양육결정 시, 아동 주소지 시·군·구청으로부터 아동 인도



8 입양허가 결정

- 입양허가 확정 시, 법원 확정증명원 사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(등기우편, 법원확정증명원 통지 후 7일 이내)



9 친양자 입양신고

- 예비양부모 주소지 시·군·구청에 친양자 신고(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)

- 아동권리보장원에 서류 제출(등기우편, 친양자신고 후 7일 이내)

제출서류

- 친양자입양신고 접수증
-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

10 아동 인도(*임시양육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에 한함)

- 아동 주소지 시·군·구청으로부터 아동 인도

* 예비양부모 주소지로 전입신고

** 입양촉진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

제출서류

- 입양 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
-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
- 통장사본 1부



11 사후서비스

- 보건복지부 위탁기관과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간 총 6회의 법정사후서비스(대면) 진행

* 부모 혹은 아동이 원할 시 1년 이상 사후관리 가능

** 필요시 입양가정 적응지원 서비스 지원

*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단계별 안내 예정

아동권리보장원
교육 사이트 바로가기

